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386
----------	------

제출일자 : 2023. 10.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함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에 관리·운영사무 위탁 필요

다.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도 예산 1,402백만원(시비 903, 군비 499)

마. 조직 및 구성

합 계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계약직
22	1	1	2	10	8

바.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위탁기간	수탁기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논공읍 논공로 697-9	1993.3.27.	2019.1.1.~ 2023.12.31.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사. 위탁기간: 5년(2024.01.01. ~ 2028.12.31.)

아. 수탁기관 선정 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
- 심의안건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적격 여부 성과평가
- 심의인원 : 6명(부군수, 교육복지국장, 외부위원 4명)
 - ※ 외부위원 : 변호사,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 (사)행복올타리 시설장, 정
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심의방식 : 서면심의(평가자료 사전배부 후 평가 실시)
- 심의방법 : 평가표에 항목별 점수 부여 후 산술 평균 70점 이상 시 가결

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

- 2023. 8. : 재계약 서류 접수
- 2023.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23. 10. : 재계약 체결
- 2024. 1. : 위·수탁 개시

차.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불임 참조

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 평균 87점(적합)
 -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불임첨부

3.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운영평가 심의의결 자료**

[붙임 3]

심사집계표

연번	법인명	심사 위원별 점수(6명)						총점 (A)	평균 (B)
		1	2	3	4	5	6		
1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84	85	88	93	95	85	351	87.7

※ 총점(A) =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합계

평균(B) = 총점(A) / 4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위원수)

심사위원 개별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평균점수 87 점으로 위 기관을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합/부적합 함

2023. 9. 13.

확인자 위원장 김광엽 김광엽

[붙임 4]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건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재계약 심의																														
의 결 내 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의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결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와의 재계약이 (적정) / 부적정 함을 의결함 (재계약 기간 : 2024. 1. 1. ~ 2028. 12. 31)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23. 9. 13.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2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심 의 위 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김 창 엽</td> <td style="text-align: center;">김창엽</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위원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나 상 권</td> <td style="text-align: center;">나상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남 주 연</td> <td style="text-align: center;">남주연</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윤 지 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윤지선</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 무 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무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 계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계원</td> <td></td> </tr> </tbody> </table>				심 의 위 원		서 명	비 고	위 원 장	김 창 엽	김창엽		부위원장	나 상 권	나상권		위 원	남 주 연	남주연	1	위 원	윤 지 선	윤지선		위 원	이 무 회	이무회		위 원	정 계 원	정계원	
심 의 위 원		서 명	비 고																												
위 원 장	김 창 엽	김창엽																													
부위원장	나 상 권	나상권																													
위 원	남 주 연	남주연	1																												
위 원	윤 지 선	윤지선																													
위 원	이 무 회	이무회																													
위 원	정 계 원	정계원																													

※ 위원장 유고 시 심사당일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척도(점수)			평가점수
			우수(상)	보통(중)	미흡(하)	
합 계		100				
I.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5	5	3	1	
	2. 법인의 보유자산	10	10~7	6~4	3~1	
	3. 법인대표 및 이사회 적합성	5	5	3	1	
	4. 법인의 사회복지 사업 운영실적	10	10~7	6~4	3~1	
II.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점)	1.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5	5	3	1	
	2.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5	5	3	1	
	3.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20	20~14	13~7	6~1	
	4.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5	5	3	1	
	5. 최근 법인 재무제표	15	15~10	9~5	4~1	
	6.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7. 재정 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8.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III. 지역사회 공신력 (20점)	1.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10	10~7	6~4	3~1	
	2. 재정 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5	5	3	1	
	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5	5	3	1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23. 9.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적
검
정
성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사회복지관 운영은 **법령상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관장이 운영토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의 가능한 대상범위를 법에 의해 설립할 수 있고,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한 점.
책임과 자격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이 사회복지관의 운영 목표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점과 후원금의 관리 및 보조금의 지출 등 일부 공신력이 요구되는 공공성이 있는 사무임.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함으로 공공성 및 공신력 부분이 해소됨.
 - 사회복지관은 법적의무설치시설로 서비스공급의 불확정성 및 중단가능성은 없으며, 공급의 안정성이 필요한 사무임.
- 경제적 효율성
 -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으로 사업비 등 활용가능

(단위:천원)

연도	법인전입금	후원금 수입
2018	17,000	275,006
2019	17,000	182,321
2020	17,345	181,594
2021	23,700	321,315
2022	45,443	325,163

▶ 직영시 후원금 모집·접수 불가(관련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적 정 성
검 토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구분	직영	위탁	비고
복지관운영 경험	부존재	수탁기관별 상이	
복지관련 전문가	부존재	수탁기관별 상이	
사업수행역량수준	매우 낮음	높음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 결과 반영

※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결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결과)

평가연도	직영 평균점수	위탁 평균점수
2015년	56.8점	93.6점
2018년	48.5점	90.6점

▶ 출처

-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보도자료 2016.1.17.)
- 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7.6점(보도자료 2019.3.20.)

- 직영운영시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연속성이 낮고, 복지관 고유 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임.
- 법인 이사회의 사회복지전문가 존재여부에 따라 가점부여, 사회복지 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민간의 전문지식 확보 및 기술활용 가능.

○ 성과측정의 용이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 실시로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성과 측정 가능함.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시설평가결과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종합등급 A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종합등급 A

적 정 성 검 토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구분	관련법규 유무	관련법규
	회계	존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운영	존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칙 규정	존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p>-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이 마련되어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은 후원금, 예·결산서 공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을 따르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점, 감독기관의 감독과 관련 법규에 의한 규정이 있어 투명성이 확보됨.</p>		
	<p>□ 종합의견</p> <p>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서비스공급에 공공성이 있고, 직영보다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하며,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시 공공성과 안정성 부분 만족되며,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수입으로 경제적효율성이 확보되며, 23년간의 운영경험과 전문지식 활용, 법률에 의한 운영으로 관리되는 점, 대구시 운영 사회복지관 20개소 전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p>		

